

경남지역 공공조달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-경남지방조달청 업무협약서

경상남도교육청, 경남지방조달청(이하 "협약기관"이라 한다.)은 지역 공공조달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남지역 공공조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촉진을 활성화하고 공공조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이를 위한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1.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촉진 및 활성화
2. 공공조달 역량 강화 및 서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
3. 공정·투명한 공공조달 확립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

제4조(기관별 역할)

1. 조달청은

- ①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운영 및 개최
- ②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공조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
- ③ 경상남도교육청이 발굴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희망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
- ④ 조달업무(제도) 소통 채널 마련 및 다양한 조달정보 제공

2. 경상남도교육청은

- ① 지역제품 구매 및 판로 활성화를 위한 내·외부 지원
- ②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공조달 교육 안내 및 지원
- ③ 공공조달시장 진입 희망기업 발굴 및 협약기관에 정보 제공
- ④ 지역별 공공조달 연계 참여 가능한 행사 정보 제공

제5조(효력)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, 해지일자를 정하여 동 해지일자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는 일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.

제8조(협약에 의한 조정)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협약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기관이 별도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.

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6월 19일



경상남도교육감
박종훈



경남지방조달청장
황의석